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원 입학금 폐지〉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13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31.
3. 회부연월일 : 2026.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이는 2023년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당시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학원별 입학금의 쓰임새는 학생복지비, 시설비, 각종 행사비, 신입생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으로 제각각이며, 산출 방식 역시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원에서는 입학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의구심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합니다. 대학원 입학금만 존치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학의 설립자·경영자가 대학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u>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u>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u>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③ ~ ⑫ (생략)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학교의</u> ----- ----- <u>사람으로부터</u> <u>터</u> -----. ③ ~ ⑫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1. 대학(학부) 입학금 폐지 경과

-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제2항은 2019년 12월 개정되어 대학생에 대하여 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는데, 동 규

정이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제29조 및 제29조의3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에 입학·편입학하는 사람’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대학원생에 대한 입학금은 여전히 부과되고 있음.

- 현재 대학원의 입학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국·공립대 약 18만원, 사립대 약 7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학원 평균 입학금 현황>

(단위: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국공립대	180,921	184,108	184,787	184,756	184,002
사립대	704,812	706,202	716,531	709,757	711,107

자료: 교육부

- ☐ 입학금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때 내는 비용으로, 입학금의 정의, 목적, 사용 용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대학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2017년에 실시된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입학금의 33.4%는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입학금의 사용 목적과 성격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과정을 거쳐 2023년 최종적으로 모든 대학이 학부 입학금은 전면폐지하였음.

2017년 당시 학생 1인당 학부 입학금은 평균 63만 7,000원으로 조사

되었는데, 정부는 2018년부터 학부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입학금 감축 대응 장학금 및 신·편입생 지원)¹⁾을 통해 입학금 감축교의 신·편입생이 부담하는 등록금 상승분을 보전하였음.

- 참고로, 대학 입학금 폐지 당시 교육부는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학금 중 입학 업무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등록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입학금이 완전히 폐지되는 2023년 이후에는 4년제 사립대는 2017년 입학금의 20%, 전문대는 2017년 입학금의 33%를 등록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협의함.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입학금의 사용용도, 책정기준 등이 불명확하고, 사회초년생인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사유로 폐지되었던 학부 입학금과 같이 대학원의 입학금을 폐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1) 국가장학금 2유형 중 신·편입생에 관한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국가장학금 Ⅱ유형 신·편입생 지원 계획 및 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Ⅱ유형	신편입생 지원	집행	67,885	84,430	87,812	81,906	79,929	59,975	53,884
		예산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자료: 교육부

개정안에 의할 때, 대학원 입학금이 폐지되면 대학원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과거 학부 과정의 입학금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입학금의 징수 목적과 책정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는 바, 대학원 입학금에 대한 별도의 규정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대학원 입학금 폐지는 학부 입학금 폐지 때와 같이, 관련 기관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대학 입학금 폐지 과정을 살펴보면, 학부 입학금은 교육부와 관련 기관들의 협의를 통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며, 합의를 전제로 2019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하였음.

이와 같이, 학부 입학금 폐지는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일부를 등록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고, 해당 인상분은 국가장학금을 통해 학생들에게 보전해주면서 정책 대상 집단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책이 이행되었음.

- 개정안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 없이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을 등록금에 산입하여 오히려 등록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으며,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상분은 온전히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따라서, 입학금 폐지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대학 학부 입학금 폐지 당시 교육부는 입학금 감축분의 일부를 국가장학금을 통해 지원한 바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면 연간 약 262억 2,2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공립	6,283	6,406	6,534	6,665	6,801	32,689	6,538
사립 일반	16,757	17,721	18,746	19,837	20,998	94,059	18,812
사립 대학원대학	797	833	871	910	951	4,362	872
합계	23,837	24,960	26,150	27,412	28,751	131,110	26,222

주: 대학 학부 과정 입학금 폐지 당시 지원 비율을 준용한 것으로 개정안 시행 시 구체적인 제도 운영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관계기관 의견으로, 교육부는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대학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등록금 인상의 유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고, 대학 입학금의 경우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폐지 후 그 일부를 등록금에 산입하는 대신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여 그

상승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학생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부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도 불충분한 현재 상황에서 입학금 폐지에 대응하여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학금 폐지에 앞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93